

#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도읍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49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8. 2.

발의자 : 김도읍 · 정태옥 · 김성원

김정재 · 최연혜 · 이채익

권석창 · 신상진 · 김명연

성일종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이 법의 적용 대상인 부패범죄의 범위에 「형법」이 적용되는 횡령죄, 업무상횡령죄, 배임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부패범죄에 포함되어 있으나, 동일한 내용의 범죄로서 죄질이 더 중한 「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이 적용되는 이득액 5억원 이상의 횡령죄, 업무상횡령죄, 배임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부패범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집행상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, 부패범죄의 범위에 「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이 적용되는 이득액 5억원 이상의 횡령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(안 별표 제4호·제9호·제16호·제19호·제21호·제27호·제28호).

법률 제 호

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제4호, 제9호, 제16호, 제19호, 제21호 및 제2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표 제28호를 삭제한다.

4. 「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(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죄로 한정한다) 및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

9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6조의 죄

16. 「한국마사회법」 제5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

19. 「고등교육법」 제64조제2항제2호의 죄

21.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47조제1호 및 제48조제1호·제2호의 죄

27. 「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」 제58조 및 제59조의 죄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